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7월 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7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해양)

□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의2 신설)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6조의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 3)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4조의2 비밀엄수 조항 신설은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 조례대로 개정되면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는 것인가요? ○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 공무원쪽에서도 공직협의 의견이 조금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중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동절기 1시간이 늘어나도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임 ○ 네, 그렇습니다. ○ 근무여건이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OECD국가들도 그렇듯이 몇 년후에는 직협의 조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들어가지 않음. ○ 네, 그렇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261호
의결 연월일	2004. 7. 16 (제113회)

제안년월일 : 2004년 7월 15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조례 제4조의2 비밀엄수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지만 상위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

2. 주요골자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삭제.
(안 제4조의2)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비밀엄수)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u>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u> <u>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u> <u>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사항</u> <u>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u> 	<p><삭 제></p>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의결년월일	2004. 7. 16 (제113회)

제출년월일 : 2004. 7. 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의2 신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수정안 포함]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본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별표 3의 출산의 일수란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 -----.</p>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4</u>
6월이상 1년미만	<u>7</u>
1년이상 2년미만	<u>10</u>
2년이상 3년미만	<u>13</u>
3년이상 4년미만	<u>16</u>
4년이상 5년미만	<u>19</u>
5년이상 6년미만	<u>22</u>
6년이상	<u>23</u>

②·③ (생략)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u>1</u>

제18조(연가일수) ①-----
-----.

재직기간	연가일수
-----	<u>3</u>
-----	<u>6</u>
-----	<u>9</u>
-----	<u>12</u>
-----	<u>14</u>
-----	<u>17</u>
-----	<u>20</u>
-----	<u>21</u>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	<u>3</u>